

[첨부] 협약서 양식

신·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 협약서

제1조	협약목적	신·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 중 KS인증대상 제품의 성능시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,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.			
제2조	“을”	기관(법인)명	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(서산)	고유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94-82-00223
		주소(소재지)	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-10 (옥외실증센터)		
		전화	041-419-3205	전자우편주소	bipv@kcl.re.kr
		대표자	윤갑석		
제3조	위탁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·재생에너지설비별 한국산업표준(KS)에 요구하는 신규 KS인증 대상제품의 제품심사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사후관리 제품의 시험 			
제4조	위탁분야	(KS C 8567) 태양광발전용 접속함			
제5조	신의성실의무 및 협약의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신·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제품의 신규 인증의 제품심사 또는 특별 사후관리 대상제품의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갑은 을이 KS인증제도에 부합한 제품심사 및 제품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			
제6조	협약기간	본 위탁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지정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			

갑과 을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KS Q 8003 KS인증제도 - 신·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」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 대상제품의 신규 인증의 제품심사 및 특별 사후관리 대상제품의 시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.

2019 년 12 월 17 일

<갑.> 기관명 : 한국에너지공단
대표자 : 김상업

<을.> 기관명 :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대표자 : 윤갑석



첨부서류	1. 위탁업무 협약 조건
	2. 부속서
	3. 시험업무 인력 및 시험장비 현황

(첨부 1)

위탁업무 협약 조건

이 위탁업무 협약조건은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(이하 “갑” 이라한다) 이 제품심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.

제1조(의무사항) 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KS인증 공장심사 합격을 통보받은 신·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신청자로부터 제품심사 의뢰를 받는 경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신·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준(신·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업무규정)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KS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및 “갑”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,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조(절차) 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KS인증 공장심사 합격을 통보를 받은 KS인증신청자로부터 제품심사 의뢰를 신청 받은 경우 및 인증기관이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.

② “을”은 제품심사 또는 시험을 완료하고 그 성적서를 “갑”의 KS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“인증신청자”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한다.

제3조(제품심사 기준) ① 제품심사 적용기준은 인증 신청제품의 한국산업표준(KS)의 시험방법 및 해당 KS인증심사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품심사를 위한 적용 기준에 대해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시험결과의 책임) “을”은 성능검사 장비 및 시험인력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 및 제품심사 결과(시험성적서)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5조(공평성 보장) ① “을”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. “을”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, 서비스 또는 활동(KS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, 기술지원, 사내교육 등)을 수행하지 않는다.

②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인원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(시험요원이 KS인증 신청자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교육/OJT를 실시한 경우, 공동으로 R&D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) “을”은 해당 시험요원이 KS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이 공평성 리스크/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, 서비스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, “을”은 이를 서면으로 “갑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“갑”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“갑”은 KS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“을”에게 행사하지 않는다. 또한, “을”은 KS인증 신청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

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비밀준수) "을"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 획득한 모든 정보, 데이터, 사실 등을 기밀로 취급한다. 다만, KS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사후관리) ① "갑"은 "을"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으로서의 협약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/비정기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② "을"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, "갑"이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

③ "갑"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과의 협약 유지, 취소, 개선/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수수료) ① "을"은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에서 적용된 제품심사 수수료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, 조정이 필요한 경우, "갑"과 협의 후 정한다.

제9조(배상책임) ① "을"이 위탁받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KS인증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"을"은 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"을"은 제1항에 따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"갑"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(관련 법규) 본 협약은 산업표준화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에 적용받는다.

제11조(협약서 보관) 본 협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2조(기타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"을"이 정한 시험업무 자체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경과규정)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 "을"에 해당하는 경우, "갑"의 KS업무운영규정의 위탁기관지정 관련 기준을 정기 사후관리시 까지 만족하여야 한다.